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정해숙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해숙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9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17일

발 의 자 : 정해숙, 진선아, 김경이, 양순임,
이용진, 경수현, 소형준, 정윤주,
이호건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홈페이지 폐기(안 제3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자정부법」

나. 협조부서 : 홍보전산과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다. 입법예고 : 2023. 3. 17. ~ 2023. 3. 2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,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 ①</u> 주관 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 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 관할 수 있다. <u>②</u>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제37조 ~ 제40조</u> (생략)	<u>제38조 ~ 제41조</u> (현행 제37조부 터 제40조까지와 같음)